

『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최호정 의원입니다.

- 『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-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현행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주민등록이 가능한 내국인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임산부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개선할 필요

가 있습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
국적·인종 등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
장이 노력하도록 하고,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
산부도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의 지원과 교통비 지원
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
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
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
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
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